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3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 등 단체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려고 함

□ 주요골자

- 보훈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목표액을 정함(안 제2조)
- 보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보훈사업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보훈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보훈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2.11.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의안번호	제66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등 단체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려고 함

□ 주요골자

- 보훈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목표액을 정함 (안 제2조)
- 보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보훈사업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보훈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보훈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향상 및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②기금은 2006년까지 총10억원을 조성하며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보훈 복지향상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자, 보훈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영한다.

③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되 지출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3. 지 출 원 :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